2020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eou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OICEYE
voiceye.com

2020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연구책임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서동명
참여연구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염형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이정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이호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eou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ENTS

제 1 장 |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제 3 절. 연구 수행체계 6

제 2 장 |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제도 개관 및 현황 분석

제 1 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개요 7

1. 기관 개요 7
2. 주요 지원 현황 8

제 2 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 12

1.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필요 12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 필요 13
3. 모니터링 근거 규정 필요 14
4. 옹호기관 직원보호 규정 필요 14
5.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15

제 3 절. 소결 15

제 3 장 | 관련 법률 및 제도현황 :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중심으로

제 1 절. 조사 절차 및 조사 가이드라인 16

1. 조사 절차 16
2. 조사 가이드라인 21

제 2 절.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23

1. 조사 이후의 업무 23
2. 지자체의 업무협조 24

제 3 절. 실태조사 27

제 4 절. 소결 27

제 4 장 | 연구결과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제 1 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29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전문 ····· 29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해설 ····· 32
(1) 조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 32
(2) 사후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주택 공급 규정 마련 ····· 33
(3) 지방차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 마련 ····· 34
(4) 장애인복지시설 모니터링 근거 규정 마련 ····· 36
(5) 서울옹호기관 직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37
(6)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공식절차 마련 ····· 37
제 2 절.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안 ····· 38
1.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 필요성 ····· 38
2.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수정(안) ····· 38
3.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안 해설 ····· 47
제 3 절. 관련 법률 개정안 ····· 50
1.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관련 내용 ····· 50
2. 21대 국회에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 ····· 51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 제언 ····· 52

VOICEYE
voiceye.com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1]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서울시를 관할로 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증진조례’)[2]에서는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와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제9조의3(운영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증진조례 제9조의2에 규정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⑤ 이하 생략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⑤ 이하 생략

VOICEYE
voiceye.com

〈표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인권증진조례」에 옹호기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하다. 서울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가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대비율이 더 높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례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서울옹호기관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235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106건과 잠재위험사례 21건 총 12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019,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보면, 피해장애인 127명 중 시설 거주인이 40명(31.5%)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학대발생장소 역시 장애인거주시설이 32건으로 학대로 판정된 106건의 25.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옹호기관이 시설 내 장애인 학대사건 개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옹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조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복지법」과 「인권증진조례」가 있다.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7 제3항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증진조례」 제9조의2 제2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에 대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의 경우 '장애인복지정책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증진조례」 등에 이러한 공동조사의 수행방법 및 준수사항, 조사결과의 처리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공동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학대가 발생하거나 학대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사경험이 부족하여 학대발생 여부 및 인권침해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대 및 인권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서울옹호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된다. 따라서 서울옹호기관이 조사를 실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3].

넷째, 직원보호 방안과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응방안이 미비하다. 한편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 내 학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가해자, 시설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서울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례 등에 세부 내용 명문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러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때문에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수행이 서울옹호기관에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압력, 이해관계자의 보복성 민원 등으로부터 서울옹호기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특히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신고접수 및 조사 절차에 따르면 되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개관 및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관련 법률 및 제도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운영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앞서 실시한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규정 개정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조례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을 각각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과 3개 기관의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사업안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등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함께 살펴보았다.

2) 연구진 세미나

총 4회에 걸친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 문헌연구 탐색결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모든 연구진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무진이 참여하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하였다.

3) 온라인 토론회

문헌연구와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 연구진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개선(안)’을 1차적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하여 자문위원 및 내·외부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3가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 개선안'을 조례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3 절 연구 수행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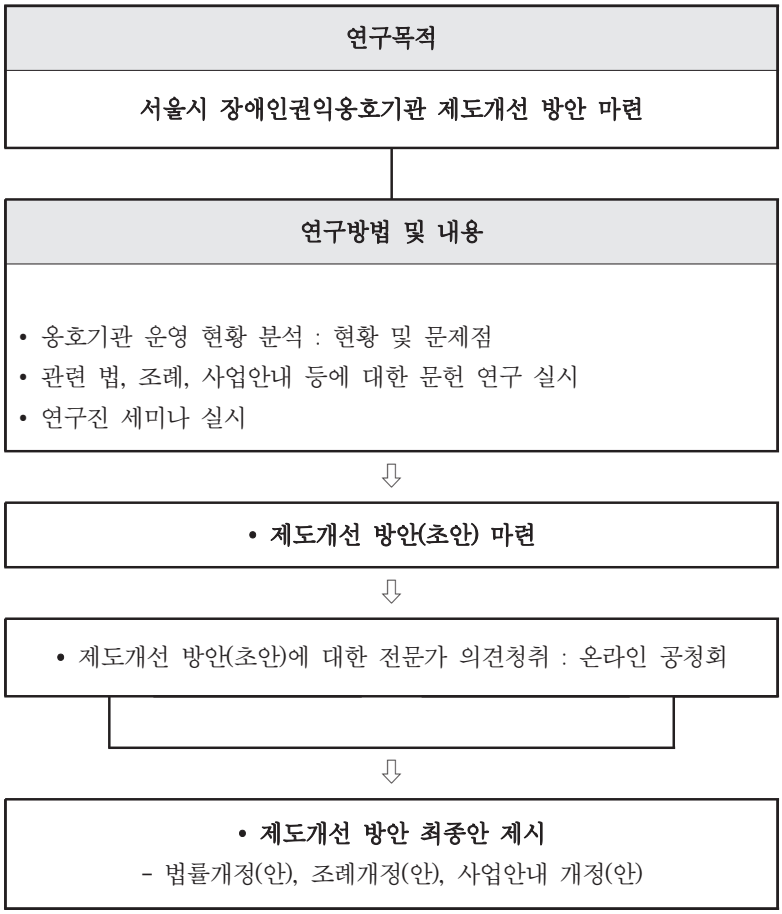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 2 장 서울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제도 개관 및 현황 분석

제 1 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개요

1. 기관 개요

1) 설치 근거 및 주요 기능

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이다. 서울시를 관할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비롯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상담, 인권차별에 대한 조사·구제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에서도 장애인 학대 외에 장애인 차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있지만 조례 제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관별로 다르다. 서울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서울옹호기관의 업무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업무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상담 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 현장조사 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월별 실적, 주요 활동(홍보, 교육 등), 주요 학대사례 보고 ·사업계획서 공유 기타 요청에 따른 업무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가능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의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2) 조직 구성

서울옹호기관의 조직은 관장, 인권증진팀, 상담조사팀, 기획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11.30. 기준으로 관장 1명, 3개 팀 15명으로 법·인권·사회복지(장애인복지) 시민사회 분야 상근 경력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복지정책, 장애아동노인 학대 젠더폭력 정신건강 등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촉하여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지원 현황

1) 사례지원 체계

서울옹호기관의 사례지원은 신고접수 후 조사 및 판정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종결판단을 하여 사례종결 및 (필요시) 모니터링 실시 후 개입종료를 하게 된다. 사례지원 시 피해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법·의료·심리·거주·복지·기타지원 중 필요한 지원을 한다. 서울옹호기관의 경우 이 과정에서 긴급사례지원비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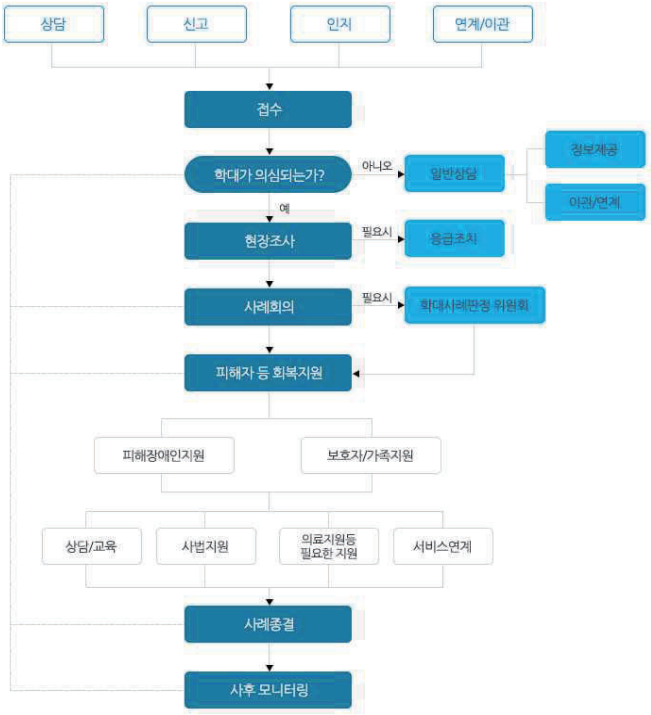

<그림 2-1> 사례지원 체계[4]

2) 상담・조사・구제

서울옹호기관에서의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와 차별과 관련한 신고접수, 조사, 구제와 관련한 주요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먼저 서울옹호기관이 공식 개소한 2014.2.13 이후로 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535건에 해당한다. 해마다 다소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2018년에 901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접수가 되었고, 2019년에는 76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표 2-2>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57	739	694	777	901	767	4.535

2019년에 전국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보면 경기 981건에 이어 서울 767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2019년 서울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 767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가 113건으로 전체의 14.7%이며, 일반사례가 654건으로 85.3%를 차지한다. 전국의 신고건수는 전체 4,376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 신고건이 1,923건으로 43.9%를 나타낸다. 타 지역에 비하여 서울은 학대의심사례 신고건에 비하여 일반사례 신고건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학대 외에 조례에 근거한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례 신고 건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일부 내용 표에는 생략, 「2019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참고).

<표 2-3> 2019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13	14.7	654	85.3	767	100.0
전국	1,923	43.9	2,453	56.1	4,376	100.0

일반 사례는 크게 차별 상담, 정보제공(단순 법률상담, 복지・정보 문의 등), 정서적지지, 기타 사례로 분류된다. 일반사례 654건 중 정보제공이 455건(69.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4) 출처: 서울시 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5) 서울옹호기관. 2019.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서」에 기초하여 작성함.

로 차별상담 71건(10.9%), 기타 67건(10.2%), 정서적 지지 61건(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2019년 일반사례 접수 현황

(단위: 건, %)

일반사례 유형				계
차별상담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기타	
71	455	61	67	654
10.9	69.6	9.3	10.2	100.0

장애인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건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2019년 서울옹호기관의 학대의심사례 113건 중 조사건수는 104건으로 실시율은 92.0%에 해당한다.[6] 학대조사 실시율은 전국적인 실시율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학대조사 실시율은 74.4에서 100%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존재한다(표 내용은 생략, 「2019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참고)

〈표 2-5〉 2019년 학대조사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율
서울	113	104	92.0
전국	1,923	1,721	89.5

서울옹호기관의 학대의심사례 113건에 대하여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 횟수는 1,787건으로 사례 1건당 평균 15.8회로 나타났다.

〈표 2-6〉 2019년 상담 및 지원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1건당 평균 지원횟수
113	1,787	15.8

사례종결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 지원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며, 2019년 학대의심사례

6) 학대조사 미실시건은 옹호기관 개입 전 이미 경찰이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제3자가 피해장애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하여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장애인 본인의 명시적 개입 거부나 연락두절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연말 접수건으로 조사가 다음 해로 넘어가 통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113건에 대한 연내 종결사례는 63건으로서 당해 연도 종결율은 55.8%로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표 2-7〉 2019년 당해 연도 사례종결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연내 종결사례	당해 연도 종결률
113	63	55.8

3) 장애인 학대 예방 사업[7)]

직접적인 상담, 조사, 구제 활동 외에도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과 매뉴얼 개발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하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관내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서울시의 의뢰로 집단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례지원 및 시설 자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옹호기관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민간조사원 기관 소속 직원 이용자 및 종사자를 1:1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17년 직업재활시설 2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도 직업재활시설 79개소,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0개소・주간보호시설 126개소・공동생활가정 189개소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7) 서울옹호기관. 2019.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백서」에 기초하여 작성함.

VOICEYE
voiceye.com

<표 2-8>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현황

구분		2017(시범사업)	2018	2019
대상시설	직업재활시설	23개소	79개소	-
	주간보호시설	-	-	126개소
	공동생활가정	-	-	187개소
	평생교육센터	-	-	10개소
참여자수	이용장애인	455명	2,368명	2,562명
	종사자	142명	433명	894명
	민간조사원 (모니터링요원)	12명	17명	37명
(심층)재조사		2개소	13개소 (11개소 개선 요청 공문 발송)	5개소

제 2 절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

1.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필요

전국 대부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옹호기관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중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와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주요한 업무로서 장애인 학대나 인권차별 발생 시 조사를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인권차별 관련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장애인 학대조사는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 과정이며,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도 장애인 인권차별에 관한 유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대와 인권차별 조사는 권익옹호 활동에서 조사 과정은 학대와 인권차별을 확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실상의 시작 단계이며, 이후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옹호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특히 인권차별에 관한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때 몇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조사와 달리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장애인 인권차별이 신고 접수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인권차별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설에서는 사전에 조사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

제제기를 하며 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서울시 공무원과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옹호기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할 조사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은,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협조를 얻어 원활한 조사를 해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인권차별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에 대한 서울옹호기관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차별을 조사할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옹호기관의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인권차별 조사 절차가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 필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가 신고·접수되면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보호·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며, 지원이 끝나면 사례종결을 한 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입이 마무리된다. 이때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장소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지하며,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할 지자체에 통지한다. 이때 서울옹호기관은 대부분의 지역옹호기관과 달리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고 사항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통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처분 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대를 조사한 서울옹호기관의 행정처분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타 분야의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3. 모니터링 근거 규정 필요

서울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행정처분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행정처분 통보 결과에 대하여 서울옹호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 내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 결과를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는 있으나 문서로 통지하거나 문서통지를 의무화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결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일일이 신경을 써서 행정처분 여부와 내용을 직접 챙겨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옹호기관에서 학대 발생으로 보고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지자체에서 옹호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옹호기관 직원보호 규정 필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는 과정, 특히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를 조사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 수행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지방자치단체, 시설종사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등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이들의 압력과 보복성 민원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수준의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만으로 실제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했을 시 직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대 조사와 달리,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안내 등 공식적인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문제제기에 대응이 어려워 원할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서울옹호기관의 직원 보호 차원에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인권차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옹호기관의 내부의 지침이나 관행에 기초하여 직원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의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직원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식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에 조사 원칙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인권차별 조사 과정에서 서울옹호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바르게 절차를 밟을 경우 직원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최근 서울옹호기관이 수행한 학대 조사와 지원에 대하여 학대행위자, 신고자 등 이해관계가가 고의적으로 다수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지자체에서 옹호기관에 제3자 의견 조회를 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민원인에게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서울옹호기관에의 업무 부담 가중은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정보보호와 서울옹호기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정보공개 원칙과 공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소결

지금까지 서울옹호기관 운영의 현황과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과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학대조사와 인권차별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서울옹호기관의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인권차별 조사 절차가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처분 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모니터링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앞서 제시한 서울옹호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행정처분 통보 결과에 대하여 서울옹호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이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 학대와 인권차별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옹호기관 직원 보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째, 현재 규정에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와 서울옹호기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3 장 관련 법률 및 제도현황 :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중심으로

제 1 절 조사 절차 및 조사 가이드라인

1. 조사 절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옹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증진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증진조례 제9조의2[8]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로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업무와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식 개선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차별' 조사 및 구제 업무[9]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차별이 아주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실상 장애인학대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10]을

---

8)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9) 조례의 문언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되 조사와 권리구제는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만 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개념정의를 두고 있으니 '장애인 인권차별'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여 장애인차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포괄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 인권침해가 장애인학대는 아니고, 장애인차별과 장애인학대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장애인차별은 학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이것은 장애인차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이 보이스피싱처럼 장애와 무관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서비스나 급여 제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등도 넓은 의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애인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 시점에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신고접수 4,376건 중 2,453건(56.1%)이 일반사례였으며 서울옹호기관의 경우 전체 신고접수 767건 중 일반사례가 654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일반사례에는 장애인학대로 보기 어려운 장애인차별, 정보 문의, 민원, 기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다.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먼저 학대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절차를 비교하여 보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각각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하여 별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규정되어 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세 법 모두 동

---

11)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 · 신고자 ·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VOICEYE
voiceye.com

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① 학대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②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③ 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나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는 피해자 등을 행위자에게서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학대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 세 기관 모두 사전 조사 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의 현장출동 관련 규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찰동행 요청 권한과 현장조사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현장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13]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된 취지는 조사가 불시에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대상자의 조사 거부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법률에서 조사의 범위를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대 조사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포괄적인 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라면 인권증진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를, 장애인 인권차별과 관련해서는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인권증진조례에서도 제9조의2[14]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로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 · 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4)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업무와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조례 혹은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지침인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권증진조례에는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인 제9조, 기능에 관한 제9조의2, 위탁에 관한 제9조의3 외에 조사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제9조의2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관련 조사가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의 공동 조사보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자체 조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 역시 조사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서울특별시의 「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경우 장애인복지 시설 중심으로만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서울옹호기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조사 외의 서울옹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나머지 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절차뿐만 아니라 그 실시 권한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15]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만큼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 역시 위원이나 소속 직원인 공무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결정을 한 사건이다. 조사 방법[16]은 ①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② 조사 사항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③ 현장조사나 감정 ④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로 나누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나 감정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조사를 하는 위원이나 소속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17]

특히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18] 당해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에게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조사를 할 때에는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듣거나, 당해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을 수 있고 녹음, 녹화, 사진 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조사조서에 조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속 상임 보호관은 공무원으로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20]

---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19)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0) 제22조(조사수행)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옹호기관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서울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외의 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참조하여 권한과 조사 절차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사 가이드라인

조사 가이드라인, 즉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될만한 내용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조사의 방법 자체가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방법에 대한 열거가 필요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조사는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조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21]. 여기에는 장애인학대 조사의 의의와 목적, 조사 절차, 준비사항, 조사 방법, 준비물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적인 사항[22]을 더하고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한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이상의 내용이 규정된 것은 없다.[23]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사업안내는 업무 지침으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법원,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사건 처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9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는 중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24]으로는 분리조사의 원칙[25], 현장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시 준수사항, 현장의 증거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 피해아동을 먼저 조사한 후 행

2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는 2018년까지 별도의 책자로 발간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발간되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

22) 경찰 등 관계자 동행 요청, 조사시 준비물 등

23)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조사 시점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24) pp.58~62

25) 장애인학대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분리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위자를 조사하라거나 신고 되지 않은 학대 내용도 조사하도록 노력하라거나 2인 1조 출동 원칙, 증거자료가 될 사진 촬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주로 담겨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는 공통적으로 기관의 업무와 설치·운영(위·수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사업안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예컨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라던가, 피조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던가와 같은 사항들은 사업안내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며,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안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위한 내용이며, 피조사자나 일반 국민이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오히려 조사 가이드라인에 확인해야 할 정보나 서류, 의사소통 방식이나 요령 등이 자세하게 기재될 경우 조사 방해나 증거 인멸, 관련자 회유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사항조차도 대외적으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로 인식되어 조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분쟁의 사유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수많은 기관에 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피해장애인 당사자나 행위자가 아니라 신고인이나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타인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복적 목적으로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은 직원을 위한 교육자료 등 내부자료에 상세하게 적시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에 편성되어 종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조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적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사한 내용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포함시키되 상세한 조사 방법이나 요령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조사가 아닌 서울옹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른 조사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기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2 절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1. 조사 이후의 업무

장애인학대 조사가 끝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를 지원한다. 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 지원을 연계하거나 거주 장소의 이전 등 보호 방법을 강구하고 사법 지원을 하는 등 사안마다 내용은 달라진다. 피해자 지원이 모두 마무리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해당 사례에 대한 개입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된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장소(각종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만을 단순히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고 사항까지 조사 결과서에 포함하여 지자체에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역시 다수의 아동이나 노인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이를 통지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외 다른 대부분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이나 권고를 조사 결과서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만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경우 다수 이용인에 대한 거주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시설폐쇄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대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이용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전해야 하고 이후에도 자립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 서울옹호기관은 이러한 업무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정책·관행의 개선이나 시정 권고·의견 표명에 관한 권한을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자체에 학대조사 혹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권고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권고 의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관계기관 등의

장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을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한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고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산하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및 그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아니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는 그 성격과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2. 지자체의 업무협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는 지자체의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26]. 구체적으로는 피해장애인의 신분 확인이나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시 동행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긴급복지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시 제3자에 의한 업무 방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에는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유관기관별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기관에는 행정기관(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경찰관서, 119 구급대, 의료기관,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법률기관, 신고의무자 직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시설 내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하도록 하거나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지원하도록 한 사항, 생활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광역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공유[27]하도록 한 사항을 들 수 있다.

26)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63쪽
27)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154쪽

〈표 3-1〉 노인학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지도・감독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신분조회 관련 제반업무 협조 ■보호조치 의뢰 시 시설입소, 비용지원 등 행정 조치 실시 ■피해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시설학대 발생 시 조사동행, 전원조치 지원 등 ■생활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 시설 조치결과 공유 ■노인학대예방,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지원 ■노인학대 발생 시 사례 연계 및 지원(자기방임 등 개입 시 적극 협조)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협조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조사 과정에서의 동행 특히 시설 내 학대 신고 시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 내용이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협조,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달리 행정처분 결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3-2〉 아동학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28)]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장출동 및 조사 동행 요청 시 협조하는 등 적극 대응 ■시설 내 학대 신고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육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동행하고 조사 시 관련 내용 및 제반사항 등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사례전문위원회 개최 및 의견요청 시 적극 참여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신분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조치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 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서는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에서 학대의심사건이 신고 된 경우 조사를 하여 조사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를 아동보호

28)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184쪽~188쪽, 주요 내용 발췌

VOICEYE
voiceye.com

전문기관에 통지해주는 절차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권한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의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에서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유의사항에 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판단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임이 분명하므로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 및 직접 참여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29]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외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거나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광역지자체 또한 관할하고 있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현황과 처분 결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통지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지자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의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조사, 응급조치, 피해자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설 내 학대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위해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실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응급보호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다. 즉, 피해장애인을 쉼터로 이동시켜 보호하는 등 임시 거처를 확보하고 검진이나 치료, 장애인등록,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필요한 쉼터나 거주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서울옹호기관이 피해자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한 공적 자원 연계,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 등을 실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역할과 협조사항 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9)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185쪽

제 3 절 실태조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실태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옹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61조[30]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옹호기관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위탁의 근거 등을 찾기 어렵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2항의 공동 조사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등 서울특별시 소속이거나 위탁기관,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기 전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서울옹호기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실태조사의 조사 주체에 관해서도 서울특별시의 공무원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인지, 조사 권한을 서울옹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권한 뿐 아니라 절차나 방법,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현재 공백상태이다. 실태조사를 서울옹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조례 등에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절 소결

지금까지 서울옹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현황 등을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옹호기관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이외의 사항으로 볼

30) 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VOICEYE
voiceye.com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 등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사업안내 등에서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지자체의 충분한 업무협조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나 피해자지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장애인학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초지자체는 조사 과정에 의무적으로 동행하고 행정처분의 결과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광역지자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대의 재발을 막고, 해당 시설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의 체계적인 협조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항은 특히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상세히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태조사는 서울옹호기관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근거와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로 보인다. 그 외에도 서울옹호기관에서 위탁주체인 서울특별시의 요청 혹은 위탁 당시에 체결한 업무협약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초 학대조사와 관련하여 본 연구 초기에 첫째, 서울옹호기관 직원의 보호 근거 마련, 둘째, 학대조사와 관련한 독립성 보장 관련 규정 마련, 셋째, 학대조사 이후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등 업무 방해에 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독립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3[3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의 독립성이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한 주체이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과 관리감독은 별개의 사항이고, 만약 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독립성이나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비위에 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과 관련해서도 특히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을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기술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조례 개정(안) 등에 제시하지 않았다.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 4. 그 밖의 사항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 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결과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제 1 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전문

제1조~제8조의3 <생략>	
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관에는 기관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기관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기관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제9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②③④⑤항 신설 및 기존 조항은 ⑥항으로 이전〉	제9조의4(조사 실시) ①가택·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원은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피조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

	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5(조사 이후의 조치) ①기관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 현장방문, 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의6(시와의 협력) 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기관은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피해장애인 쉼터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시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자치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와 자치구,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기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관리를 시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7(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①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

VOICEYE
voiceye.com

	②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8(정보공개) 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3조 및 부칙 〈생략〉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해설

(1) 조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가) 조사개시 통보

〈조례 개정안〉

제9조의4(조사 실시) ①기관은 가택·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해설〉

현재 인권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옹호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옹호기관의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사업안내에 현장조사 준비, 관계자 동행, 현장 도착, 조사 및 면담실시,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등의 내용이 있다. 조사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조사 개시 통보, 종료·결과 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옹호기관은 가택·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당일 현장에서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옹호기관은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도 부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나) 조사 원칙

〈조례 개정안〉

제9조의4(조사 실시) ②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원은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피조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해설〉

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피조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⑵ 사후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주택 공급 규정 마련

〈조례 개정안〉

제9조의5(조사 이후의 조치) ①기관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 현장방문, 전화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해설〉

서울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2항[32]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고, 모니터링 방법은 전화, 방문 등으로 하되 피해장애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피해장애인이

VOICEYE
voiceye.com

타 기관의 보호나 관리를 받을 경우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다. 옹호기관 내 사례회의에서 모니터링의 종결 여부 및 재평가와 추가 모니터링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장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부 등으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불가 사유를 기록하고, 유사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후 사례를 종결한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례관리팀 등 복지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복지관의 사례관리팀이나 권익옹호팀에 협조를 요청한다[33].

또한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 규정 마련

(가) 피해장애인의 인도 및 시의 협력의무

〈조례 개정안〉

제9조의6(시와의 협력) ②기관은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피해장애인 쉼터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시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서울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장애인 쉼터로 인도하여야 하고, 피해장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의료기관에 인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을 공공의료기관에 인도할 때에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례 개정안〉

제9조의6(시와의 협력) ③기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와 자치구,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설〉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

3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46쪽

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와 자치구,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에도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34] 관련 자료제공 요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의5[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피조사자 측에게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다) 조사 결과에 관한 지자체 권고 근거

〈조례 개정안〉

제9조의6(시와의 협력) ④기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관리를 시에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에서도 지자체에 ①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 ②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③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 ④피해장애인의 인적사항, 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원·상담·관리 내역, 각종 증명서 등 피해자지원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자료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6]. 또한 구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결과에 관하여 서울시에 일정한 내용으로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는 학대 사후관리에 있어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3항[37]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5)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6)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p.43

3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모니터링 근거 규정 마련

〈조례 개정안〉

제9조의7(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①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 ②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옹호기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p.242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38].

3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장애인학대 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월별 실적, 주요 활동(홍보, 교육 등), 주요 학대사례 보고
- 사업계획서 공유 기타 요청에 따른 업무

(5) 서울옹호기관 직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조례 개정안〉

제9조의4(조사 실시) ⑤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서울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조사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업무를 수행 중인 서울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39].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조사 시에 이러한 점을 피조사자 측에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6)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공식절차 마련

〈조례 개정안〉

제9조의7(정보공개) 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학대조사 이후 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서울옹호기관에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 또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옹호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장애인권익옹호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에 적절히 응대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은 아니므로, 옹호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받거나 재처분을 내릴 의무는 없다.

3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제3항, 제6항 및 제86조 제3항 제2호

제 2 절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안

1.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 필요성

서울시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서울시의 장애 관련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즉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물론, 장애인지역사회·의료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재활시설 등의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직까지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서둘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와 상이한 내용은 서울시 업무 안내를 우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 업무 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서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에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본 연구에서 서울옹호기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옹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차별에 대한 대응 등 인권증진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식적인 규정이 부재하므로,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포함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인권차별이라는 두 가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면과 상이한 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별개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수정(안)을 구성하였다.

2.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수정(안)[40]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1) 목적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인권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구제,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40) 이 부분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서울옹호기관 운영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운데 일반적인 사항과 본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안내의 내용에는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비, 회계, 시설, 보고 및 평가 등 운영에 관한 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한 수정(안)은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기본 토대로 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 법령[41]

○ 기관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내지 6*

○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8 내지 10,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6 별표 5의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지 제9조의 3

○ 사후관리 등, 상담원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2, 동법 시행령 36조의 9,

○ 조사 및 조사 이후 조치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내지 5*

(3)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인권차별 등의 개념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 인권차별에서의 “차별행위”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차별을 말한다.

(4) 기관의 역할

○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상담 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41) (*)가 표시된 조항은 본 연구의 조례 개정(안)을 참고한 것임

· 장애인학대 신고 현장조사 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보고
· 월별 실적, 주요 활동(홍보, 교육 등), 주요 학대사례 보고
· 사업계획서 공유 기타 요청에 따른 업무

○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업무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가능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차별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 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예방 관련 업무 : 조례 개정(안) 제9조의 6 참고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구 가능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가능

(5) 사례지원 체계

○ 사례지원의 개념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인권차별에 대한 사례의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피해·침해·차별에 대한 회복 지원,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함

○ 지자체 등의 사례지원 협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42)]
  ·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함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 지원 등의 행정 지원을 해야 함

42)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서울옹호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업무 방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 기관은 필요 시 시와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가능하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와 자치구,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조례 개정(안) 참고)
-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아동 학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응급 분리나 치료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시는 이에 협력해야 함(조례 개정(안) 참고)
- 기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시에 요청 가능(조례 개정(안) 참고)
- 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시・군・구에서 시・도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보하여 공유해야 함[43)]
-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지원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함 (조례 개정(안) 참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사례지원의 원칙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한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례지원 과정의 각종 조치와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인권차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과 인권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옹호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피해장애인,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해당 사례의 언론 노출을 제한하고(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사례지원 종결이나 직원 퇴사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

43) 노인지역사업안내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내용에서 참고함

○ 사례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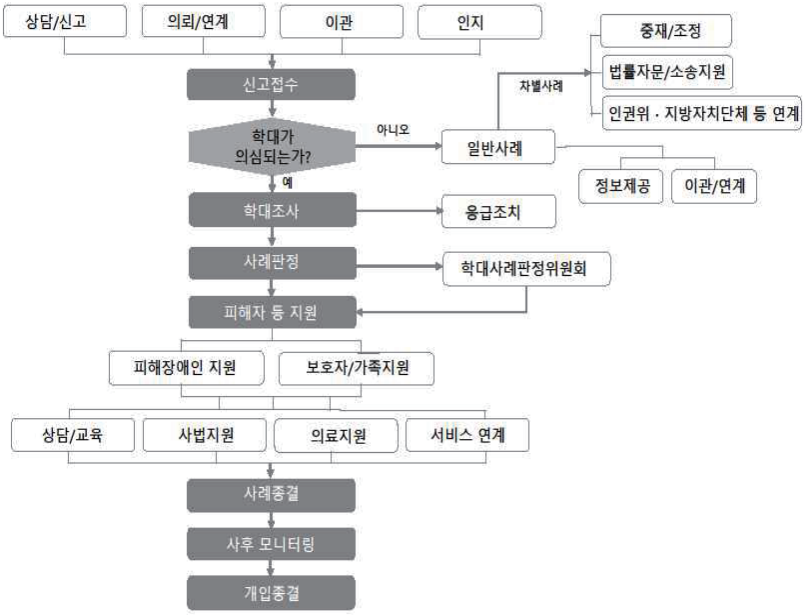

○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됨

· 거부나 방해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의 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9조의 4

○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통보

-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신고접수

- 의의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인권침해, 인권차별 의심 사례를 서울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것

- 신고의 대상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 동법 제 59조의 9의 금지행위는 모두 장애인학대에 해당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차별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현장조사의 의의 및 목적

・현장조사는 신고 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인권침해・차별 행위자 등 관련자 면담 (필요시) 응급조치 실시 목적을 가짐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학대 등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나, 현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장애인이나 관련자 면담, 피해사실 조사, 피해 입증자료 확보를 포함함

- 조사 원칙

・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조사원은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피조사자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조사 절차[44)]

① 현장조사 준비

・조사 계획 수립, 내용 공유

: 학대 및 인권침해와 차별 신고・상담 접수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가능 (조례 개정(안) 참고)

・필요 시 경찰 및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동행 요청

: 담당공무원의 동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울옹호기관 단독 조사 가능(조례 제 9조의 2, 2항 관련 조사의 경우)

・조사 진행에 전문가(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 참여 요청 가능,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수당 등 지급 가능

44)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참고
- 신고접수 / 응급조치 / 사례회의 /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사례종결 / 사후모니터링에 대해서 2018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참고하되, 장애인 학대를 비롯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대응 내용을 고려하여 추가함. 단 본 연구 주제로 볼 때 직접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래 '3.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수정안 해설'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음

② 조사 개시 통보[45)]

- 가택·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 시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구두로 현장에서 통지 가능

③ 현장 도착

- 학대·인권차별 행위자, 피해장애인의 현재 위치 파악
- 학대 현장 촬영, 목격자 등 주변 관련자 면담 실시
-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 가능
-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④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 필요 시 의료기관 인도 및 응급보호 실시
- 불필요 시 현 거주지 유지(학대가 의심될 경우 연락처 등을 교부하고 추가상담 등 향후 조치 계획 안내

- 응급조치 의의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인권차별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는 학대·침해·차별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장애인복지법」 59조의 7의 2항 참고)

- 응급조치 절차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 치료 필요한 외상이나 입원치료 필요 정도의 쇠약, 치료 여부 판단 필요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응급보호 실시

행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장애인의 의사 확인(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긴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학대행위자의 분리

45) 조례 개정(안) 제9조의 4 참고

: 성인 피해장애인에게 응급조치의 내용 안내하고 피해장애인의 의사 확인
성인 피해장애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는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도 불필요

・의료기관 또는 쉼터 등 연계
: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후송)
응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활용

○ 사례 회의
- 기능 및 운영
・사례회의는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하여 서울옹호기관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며 사례지원과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포함)
・사례회의는 해당 사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 필요 시 전문가로부터 자문 구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사례 지원
- 시설에서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대응과 지원과정을 비롯하여 사후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학대가 발생한 자치구 및 지역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역할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음
- 자치구 단위의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와 같은 구성된 체계를 활용하거나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洞)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또는 서울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각각 담당할 역할을 정할 수 있음

○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의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 실시되는 사후관리 과정의 일환
- 원칙
・서울옹호기관은 상담교육, 사법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장애인과 그 보호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제공

·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옹호기관의 피해회복 지원 범위나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됨

· 지원의 내용은 사례회의(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의 포함) 등을 통하여 결정,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사와 욕구 확인

- 상담 및 교육

· 피해 사실의 확인 및 지원 과정과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장애인과 충분한 상담 실시

· 피해장애인의 심리 회복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실시

· 피해장애인, 가족·보호자가 재학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교육 실시

- 사법지원

· 법률구조 및 형사사법절차 지원

: 서울옹호기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 변호사는 사법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
(소송 수행은 원칙적으로 피해 회복에 직접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되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

·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 서울옹호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 등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 서울옹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음

· 진술보조인

: 민사소송인 당사자인 장애인이 법원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서울옹호기관의 변호사나 직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으로 참여 가능

- 의료지원

· 의료지원은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거나,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과정,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시

- 서비스 연계

· 피해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이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사례종결

-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마무리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사후모니터링 실시

○ 사후모니터링

- 사례종결 이후 장애인학대 등의 재발 방지와 새로운 학대 등의 예방, 피해장애인과 가족, 보호자의 일상생활 복귀임
- 사후모니터링 계획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
- 모니터링 방법은 전화, 방문 등으로 하되 피해장애인과 협의하여 실시, 피해장애인이 타 기관의 보호나 관리를 받을 경우 사정에 협조 요청
- 사례회의에서 모니터링의 종결, 재평가와 추가 모니터링 필요 여부 결정

3.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안 해설[46)]

(1) 목적, 근거법령, 개념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옹호기관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근거법령은 기존의 근거 법과 조례를 명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조례 개정(안)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기관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를 학대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인권차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서울옹호기관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 규정에 포함되었던 정의를 사용하였다(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사업백서 2014-2016 참고). 참고로 조례의 인권침해와 인권차별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이어졌다.

(2) 서울옹호기관의 역할

서울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근거 법령과 조례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에 더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추가하여 구성된 서울옹호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구와 실태조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서울옹호기관은 서울시 의뢰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본 사업안내에 기관의 역할로서 포함한 것이다.

(3) 사례지원 체계

첫째, 사례지원의 개념을 장애인 학대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반에 대한 사례

46) 본 연구 주제로 볼 때 직접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항목은 이 절에서 해설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신고접수 / 응급조치 / 사례회의 /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사례종결 / 사후모니터링 등.

VOICEYE
voiceye.com

지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를 중심으로 사례지원을 개념화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대응에 관한 사례지원 또한 포함한 것이다.

둘째, 지자체 등의 사례지원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에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지자체 등의 사례지원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아동복지사업안내와 노인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추가하였다. 이것은 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발생 시설 행정처분 결과 등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 참고)). 아울러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한 조사와 업무 협조 범위를 확장하였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한 조사 후 사례관리를 통해 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 사항의 내용과 피해장애인에게 지원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의 내용도 추가하였다(「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 참고).

셋째, 사례지원 원칙은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조사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에서 별도로 서술하였다.

넷째,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학대 관련한 내용이 강조된 사례지원 체계도이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대응과 관련한 사례지원 내용을 균형 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인권차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례 개정(안)에 의해 강조하였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통보 내용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내용과 동일하다.

(4)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현장조사 원칙으로서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 공정적 자세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 개정(안)에 새롭게 제시된 조사의 범위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원칙에 포함하였다.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조사에 대해서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현장조사 준비, 관계자 동행, 현장 도착, 조사 및 면담 실시,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조사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특히 ‘조사 개시 통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서울옹호기관에서 시설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조사 개시에 대한 통보 원칙과 예외

상황, 방법 등을 사업안내에 담았다. 개선이 된다면 향후 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조사 계획단계에서 조사 진행에 전문가 참여 요청과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조사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장 도착 단계에서 정보나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받은 자의 성실한 수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조사수행) 참고)

한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 조사 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등의 조사는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에서 규정된다면 장애인학대 조사에 준하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관련 법률 개정안

1.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관련 내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의무와 업무 등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 · 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36조의9, 36조의10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⑤ 생략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운영기준) ①~③ 생략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내용 생략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③ 생략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 · 운영기준) ①~② 생략

2. 21대 국회에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

한편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 이후 2020년 9월말까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19개가 발의되었다. 이 중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학대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총 8개이다<표 4-2>.

VOICEYE
voiceye.com

<표 4-2>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2020.9.30.현재)

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2103952	20-09-16	인재근 의원 등 10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장애인학대'에서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까지 확대
2103890	20-09-15	권칠승 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 장애인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피해자 입소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102784	20-08-07	이종성 의원 등 10인	장애인 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2102767	20-08-06	강선우의원 등 17인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
2102384	20-07-27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국선변호사제도) 도입
2012298	20-07-22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상습적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 부과
2102240	20-07-21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장애인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시스템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2101788	20-07-10	이종성의원 등 10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한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의무 및 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함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 제언

앞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22인 발의안(의안번호 2102240) 등 4개이다[47]. 제안된 개정 법률안

47)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안(의안번호 2103952), 최혜영 의원 등 22인 법률 발의(안)(의안번호

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특히 서울옹호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정 법률안을 개별 법률 조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범위 확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업무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는 유형은 장애인학대 이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교육 ·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안) 참고).

여기서 제시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권익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였다. 물론 앞서 제시한 조례(안)이나 사업안내 개정(안)에서 추가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권익침해행위'가 무엇을 의미인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권익침해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권익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법률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 법률안과 같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면 지역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함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4인 기준인 현재의 인력·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업무범위만 늘어나는 것은 지역옹호기관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3〉 개정 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장애

2102240), 이종성 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2784), 권칠승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3890)

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5.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7 . ----------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권익침해 예방----------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② ----------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6.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2) 신분조회 등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추가 부과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

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제59조의 11 제3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신분조회 요청 등이 불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하고 민감한 신분조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최혜영 의원 등 22인 10인 발의(안) 참고).

〈표 4-4〉 개정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추가 부과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⑥ (생 략)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후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방해 처벌 규정 신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

VOICEYE
voiceye.com

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최혜영 의원 등 22인 10인 발의(안) 참고).

〈표 4-5〉 개정 법률안 : 사후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방해 처벌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4) 학대피해자 입소요청 거부불가 규정 신설

현재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관련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시설 측에서 거부를 하여 학대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피해자 입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안) 참고).

〈표 4-6〉 개정 법률안 : 학대피해자 입소요청 거부불가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7(응6급조치의무 등) ① (생 략)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59조13의 피해장애인 쉼터

	2. 의료기관 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4.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020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발 행 일: 2020년 12월 14일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 소: (06278)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6층
전 화: 1644-8295
팩 스: 02-3453-9528
홈페이지: http://www.saapd.or.kr/
이 메 일: seoul16440420@gmail.com

이 책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